

# 전국대학생토론대회 운영규정

제정 2015. 6. 1. 중앙토론위예규 제1호

개정 2016. 7. 26. 중앙토론위예규 제2호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중앙토론위원회”라 한다)가 주최하는 전국대학생토론대회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토론을 진흥하고 대학생의 올바른 토론관 정립과 주권의식 함양을 통하여 민주시민토론문화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본 대회는 「전국대학생토론대회」라 칭한다.

제 3 조 (주최 및 주관) 중앙토론위원회는 매년 전국대학생토론대회(이하 “대회”라 한다)를 주최하고, 학회 및 대학교 등과 공동주관할 수 있다.

제 4 조 (개최시기 등) 개최시기·장소, 기간 및 일정 등은 중앙토론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 제 2 장 운영위원회

제 5 조 (조직) ① 대회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중앙토론위원회에 대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중앙토론위원회 사무국장이 겸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앙토론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 1. 내부

가. 중앙토론위원회 소속 팀장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부서장

다. 개최지 관할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장 <신설 2016. 7. 26>

2. 외부

가. 학회장이 추천하는 학회 임원과 심사위원장 <개정 2016. 7. 26>

나. 대학교 대외협력 부서장

다. 그 밖에 운영위원회위원장이 적합하다고 추천하는 자 <개정 2016. 7. 26>

④ 임기는 매년 대회 결선일 후 30일까지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 보조 및 기관 간의 업무 협의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중앙토론위원회와 학회 및 대학교 등 공동주관하는 기관·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1명을 운영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⑥ 중앙토론위원회 소속 간사를 수석간사로 한다.

제 6 조 (직무) ① 운영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토론논제와 경기방식 및 규칙에 관한 사항

3. 심사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회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7. 26>

② 운영위원회는 대회와 관련한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가진다.

제 7 조 (운영) ①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대회를 통할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운영위원 중 중앙토론위원회 소속 대회 업무 관련 주무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서면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삭제 <2016. 7. 26>

제 8 조 (자문위원) ①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개최지 관할 시·도선거관리

위원회, 학회 및 대학교 등 소속 직원 중에서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9 조 (수당의 지급)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외부 위원·간사 및 자문위원에게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6>

제 10 조 (사무분장) 운영위원회 내에 대회 실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으로 대회 관리단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6>

### 제 3 장 참가자격 및 신청

제 11 조 (자격 등) ① 본 대회는 참가신청마감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국내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휴학생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
2. 국외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재외국민과 그 자녀에 한하며, 휴학생을 포함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1. 역대 본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사람
2.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
3. 정당한 사유없이 전년도 대회에 불참한 사람
4.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참가자격을 제한한 사람

제 12 조 (참가신청과 접수) ① 본 대회의 참가신청은 중앙토론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등록사이트를 이용하여 하되, 참가신청서와 재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최근 1개월이내 발급된 재학증명서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참가신청은 접수순위에 따라 128개 팀까지로 한다.

- ③ 참가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되, 접수순위는 등록사이트에서 자동으로 부여되는 일련번호에 따른다.
- ④ 제3항에 따라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⑤ 제13조에 따라 신청 철회 및 불참 팀이 발생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150개 팀에 이를 때까지 접수하되, 접수순위 129순위부터는 대기팀으로 처리한다. 다만, 대기팀의 효력은 대회개시일전 10일까지로 한다.
- ⑥ 팀은 2명으로 구성하며, 동일 학교 학생 또는 서로 다른 학교의 학생들로 구성할 수 있다.
- ⑦ 팀원 교체는 부득이한 경우, 참가신청 등록완료 후 1회에 한하여 대회개시일전 14일까지 등록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다.

제 13 조 (신청 보완 및 불참) ① 참가신청자는 제출한 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 참가신청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직접 보완할 수 있으며, 중앙토론위원회가 흠결을 발견한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참가신청자에게 보완 또는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6>

② 제11조의 참가자격 및 제12조에 따른 증명서류에 중대한 흠결이 있어 중앙토론위원회가 이를 보완 또는 확인을 요구함에도 참가신청자가 3일 이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참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7. 26>

③ 부득이한 사유로 대회에 불참하고자 하는 팀은 대회개시일전 14일까지 불참사실을 중앙토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정당한 사유없이 대회에 불참(대회개시일 등록마감시각까지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 다음 연도 대회의 참가를 제한한다. <개정 2016. 7. 26>

## 제 4 장 대회 논제

제 14 조 (논제 공모) ① 중앙토론위원회는 대회에 필요한 논제를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할 수 있다.

② 논제는 정치, 선거와 관련된 사항 및 대학생들의 공통 관심사에 대한 내

용 등으로 한다.

제 15 조 (검증단) ① 중앙토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과 역대 대회 수상자 중에서 약간 명의 검증단을 둘 수 있다.

② 검증단은 논제의 찬성과 반대 주장의 균형성과 필요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검증의견을 온라인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필요시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여야 한다.

③ 검증단은 운영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그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④ 외부 검증단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6 조 (논제 선정등) ① 논제는 찬성과 반대 주장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예선과 본선에 대한 논제를 각각 선정할 수 있으며, 결선의 경우에는 예선과 본선 논제 중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논제는 대회개시일전 20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 제 5 장 대회 방식

제 17 조 (조 편성 및 대진표 작성) ① 예선대회의 조 편성은 4개 팀 1개 조로 한다. 다만, 참가신청 팀이 128개 팀에 미달하거나 불참하는 팀이 있는 경우에는 3개 팀 1개 조 또는 2개 팀 1개 조로 편성하여 대진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6>

② 조 편성은 무작위로 정하되, 동일 대학교 소속의 팀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

③ 부전승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라 대진표를 작성한다. <신설 2016. 7. 26>

제 18 조 (경기방식, 규칙 등의 결정) ① 본 대회의 경기방식과 규칙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본 대회는 예선과 본선 및 결선으로 나누어 진행하며, 2팀이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논제에 대하여 한 팀은 찬성 의견, 다른 팀은 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③ 예선은 조별로 풀리그 방식으로 진행하며, 본선은 64개팀을 대상으로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한다.

제 19 조 (예선 및 본선) ① 경기진행방식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르며, 1회의 총 경기시간은 15분 이상 20분 이하로 한다. <개정 2016. 7. 26>

1. 찬성팀 기조연설(1분)
2. 반대팀 기조연설(1분)
3. 찬성팀과 반대팀 간 자유토론(예선은 각 6분, 본선은 각 8분) <개정 2016. 7. 26>

4. 반대팀 맺음말(1분)

5. 찬성팀 맺음말(1분)

② 제1항의 진행방식별 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별 결과에서 승수가 많은 팀이 승리하는 것으로 한다.

④ 예선대회에 있어서는 각 조의 다승순 1, 2위팀이 본선에 진출하되, 승수가 같은 경우 승자승, 득점(각 팀이 얻은 총 점수) 순으로 한다.

제 20 조 (결선) ① 결선은 4강에 진출한 4개 팀을 대상으로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한다.

② 1회의 총 경기시간, 경기 진행방식과 진행방식별 시간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되, 이 경우 결선 참가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결선에는 사회자를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사회자는 공정하게 대회를 진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 7. 26>

제 21 조 (경기규칙) ① 찬성팀과 반대팀의 결정은 각 경기에 앞서 팀별로 찬성과 반대를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 결정하고 경합시에는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 ② 참가자가 소지할 수 있는 자료는 찬성과 반대 자료를 포함하여 팀당 A4 용지 규격 범위 내에서 10장 이하로 하며, 어떠한 전자기기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결선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 ③ 자유토론의 경우 반대팀부터 발언하며, 팀당 1회 발언시간은 2분을 넘지 못한다.
- ④ 전체 토론시간은 각 팀의 팀원마다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⑤ 참가자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토론 중에 제시·이용되는 자료에 대한 출처나 근거 등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⑥ 참가자는 경기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팀원이 아닌 사람과 어떠한 방식으로든 의사소통 하는 행위
  - 2. 무례한 동작 또는 비속어를 사용하거나 특정인을 차별하는 행위
  - 3. 심사위원에게 위협적이거나 공격적으로 접근하는 행위
- ⑦ 참가자가 제2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5점 범위 이내에서 감점할 수 있다.

제 22 조 (상대방의 발언 중 질문) ① 상대방의 발언 중 질문은 자유토론에 한정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 1. 손을 드는 등 발언자를 향하여 적절한 동작을 취한다.
  - 2. “질문있습니다” 등의 말로 주의를 끈다.
- ② 제1항의 제기를 받은 발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답해야 한다.
- 1. 답변을 거부하는 분명한 몸짓이나 손짓을 한다.
  - 2. 거부 의사를 구두로 밝힌다.
  - 3. “잠시 기다립시오” 등과 같은 말로 잠시 보류한 후 수용한다.
- ③ 상대방의 발언 중 질문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답변을 거부당한 후에는 다시 질문할 수 없다.

2. 상대방이 답변을 시작하고 있을 때에는 질문할 수 없다.

④ 상대방의 발언 중 질문과 답변 시간은 각 팀의 발언시간에서 차감한다.

<개정 2016. 7. 26>

⑤ 제1항의 제기를 받은 발언자는 질문을 수용하거나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발언 중 최소 2회의 질문 제기를 수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6>

제 23 조 (발언시간관리시스템) ① 참가자의 발언시간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 대회장에 발언시간관리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용한다.

② 발언시간관리시스템은 노트북과 모니터 등으로 구성되며, 모니터에는 팀별 총 발언시간과 잔여시간이 표시된다.

③ 심사위원과 참가자는 발언시간관리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를 각 경기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 제 6 장 대회의 심사

제 24 조 (심사기준 등) ①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경기를 심사한다. <개정 2016. 7. 26>

1. 주장의 근거와 논리적 타당성
2. 내용 구성력, 창의력과 순발력, 이해력과 대응력 및 일관성
3. 전달력
4. 토론태도와 협동성
5. 제21조(경기규칙)제7항에 따른 감점기준
6.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특별히 정한 심사기준

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별표 [심사표]에 의하되,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25 조 (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예선과 본선의 심사위원은 대학교 교수 및 관련 업무의 박사학위 소지자로 구성하는 외부 심사위원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으로 구성하는 내부 심사위원으로 하되,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중앙토론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본 대회의 예선과 본선의 심사위원회는 경기당 3명 이상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사장은 외부 심사위원 중 1명으로 한다.

③ 결선은 5명 이상의 심사위원을 두되, 대회 심사위원장, 중앙토론위원회 상임위원과 국회의원, 변호사 기타 토론 전문가 중에서 중앙토론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 7. 26>

④ 심사위원은 중앙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심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6>

⑤ 모든 심사위원은 대회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⑥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26 조 (심사위원장, 심사장) ① 제5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심사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16. 7. 26>

1. 심사위원 자격 판단
2. 자격을 갖춘 심사위원들의 토론 심사 능력 평가
3. 대회 시작 전 심사위원 교육
4. 기타 대회의 심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

② 심사장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16. 7. 26>

1. 경기진행 및 결과 기록 관리 등
2. 각 경기별 무승부가 발생한 경우 승패의 결정
3. 경기 진행 중에 제기된 이의 처리
4. 제30조(참가자 수칙)제1항의 위반사항 적발 시 처리

제 27 조 (심사원칙) ① 심사위원은 [별표] 심사표에 따라 보조자료([별지2] 토론 흐름표)를 작성하여 심사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6>

1. 객관성 및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의 개인적 신념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아야 한다.

② 모든 심사위원은 종교, 성별, 인종, 국적, 성적 선호도, 나이, 사회적 지위,

어투, 모든 장애에 대한 차별은 엄격히 금지된다.

③ 심사결과는 비공개하며, 다음 경기가 시작하기 전에 심사결과 등 기타 정보를 누설할 수 없다.

④ 심사위원장 및 심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개정 2016. 7. 26>

1. 발언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2. 성원, 야유를 하는 경우

3. 팀원끼리 큰 소리로 대화하는 경우

4. 발언 중인 참가자와 대화하는 경우

5. 인신공격 발언을 하는 경우

6. 다른 심사위원의 주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그 밖에 심사위원장 또는 심사장이 주의를 주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신설 2016. 7. 26>

⑤ 해당 경기 전까지의 누적 심사 점수나 승리 전적은 해당 경기의 승패를 결정하는 요소가 될 수 없으며, 어느 누구도 심사위원에게 심사 결과나 토론평가를 요청할 수 없다.

⑥ 팀원 중 한 명이 특정 경기에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그 경기는 몰수패 처리한다.

제 28조 (심사등에 대한 이의제기) ①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경기 방식 및 운용 과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되, 본인 경기에 한하여 다음 경기 전까지 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장 또는 해당 경기의 심사장을 통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6>

② 제1항에 대한 이의 제기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회운영본부에서 처리하며, 이를 접수한 대회운영본부는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참가자는 본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중앙토론위원회는 홈페이지 또는 대회 안내 등을 통하여 이를 알려야 한다.

## 제 7 장 대회 진행

제 29 조 (대회운영본부) ① 운영위원회는 대회 중에 대회운영본부를 둔다.

② 대회운영본부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예선, 본선, 결선 대회의 대진표 결정
2. 경기장별 심사위원 배정
3. 심사결과의 정리
4. 각종 이의제기의 처리

③ 대회운영본부는 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토론대회관리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 30 조 (참가자 수칙) ① 모든 참가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회와 관련된 모든 문서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재하는 행위
2. 금지된 참고자료를 토론장에 몰래 반입하는 행위
3. 토론 경기 진행 중 인터넷에 접속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없이 경기장에 늦게 도착하거나 경기를 지연시키는 행위

② 심사위원 또는 운영요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심사위원장 또는 심사장에게 알려야 하며, 심사위원장 및 심사장은 당사자의 소명을 들어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팀을 실격처리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대회운영본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6. 7. 26>

③ 제2항에 따라 실격패로 처리하는 경우의 점수 처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패배한 팀은 각 구성원이 최하점을 받는다.
2. 승리한 팀은 대회의 모든 토론에서 얻은 점수의 평균점을 받는다.
3. 점수는 대회가 모두 끝난 후 합산된다.

제 31 조 (참관자 수칙) ① 오디오 녹음과 비디오 녹화 장치는 대회운영본부의 사전 승인 없이 경기장에 반입할 수 없다.

② 모든 참관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관람하고자 하는 경기 시작 10분전까지 대회운영본부에 도착하여 관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관람 승인을 받은 참관자는 대회장에 정숙하게 입장하고 질서있게 착석한다.
3. 참가자를 소개할 때와 각 경기가 종료했을 때만 박수를 친다.

③ 모든 참관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대회장에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등을 사용하는 행위
2. 대회장에 늦게 입장하거나 일찍 퇴장하는 행위
3. 토론이 진행중일때 대회장에서 진행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
4. 심사 결과에 대하여 심사위원들에게 질문하는 행위

④ 심사위원장 및 심사장은 제3항에 해당하여 대회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참관자를 강제 퇴장시키고 이 사실을 대회운영본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6. 7. 26>

제 32 조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① 다른 참가자가 참가 수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제기는 반드시 심사위원장 또는 심사장을 통해 대회운영본부에 보고되어야 한다. <개정 2016. 7. 26>

1. 모든 형태의 폭력 또는 위협
2. 성희롱
3. 스토킹 또는 신체적 희롱
4. 대한민국 법률이 정하는 불법 약물의 공급이나 소비
5.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인해 대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참가자
6. 토론 참가자와 기타 대회 참가자 사이의 모든 부적절한 관계
7. 대회장소 내 사유재산이나 공공 시설물의 의도적인 훼손

② 대회운영본부는 제1항의 이의제기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의제기 대상자의 참가자격 박탈이나 정지 결정 <개정 2016. 7. 26>

2.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 등 관계 당국에 통지

## 제 8 장 시상

제 33 조 (시상) ① 본 대회의 시상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체상 :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2. 개인상 : 스피커상
3. 특별상

② 단체상 및 개인상, 특별상의 표창서식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 34 조 (훈격) ① 본 대회의 시상훈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대상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2.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 중앙토론위원회위원장
3. 스피커상 : 주관학회의 장
4. 특별상 : 후원기관·단체의 장

② 시상훈격은 중앙토론위원회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35 조 (상금의 지급) 제33조의 시상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1. 대상은 500만원 이하
2. 금상은 300만원 이하
3. 은상은 200만원 이하
4. 동상은 100만원 이하
5. 장려상은 50만원 이하
6. 특별상은 50만원 미만 또는 그에 상응하는 한도 내에서 그 상을 지급하는 기관이 정한다.

## 부 칙

(시행일과 적용) 이 규정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7. 26>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심사표

[별지1] 참가신청서

[별지2] 토론흐름표

[별지3] 상장 서식

[별표]

## 심 사 표

예선	제( )조, 제( )심사반	본선	64강, 32강, 16강, 8강	결선	준결승, 결승
찬 성			반 대		
팀 명				팀 명	
성 명				성 명	
평가 영역 (배점)	평 가 항 목			평가 영역 (배점)	
10	기조 연설	○ 주장에 대한 근거가 논리적이고 타당한가?		기조 연설	10
40	자유 토론	○ 논점을 잘 정리해서 질문하는가?(내용 구성력) ○ 상대논리의 약점/모순점을 찾아낸 질문인가?(창의력 순발력) ○ 상대의 질문에 대하여 정확히 답변하는가?(이해력, 대응력) ○ 자기 주장의 타당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가?(일관성)		자유 토론	40
10	맺음말	○ 주장을 설득력 있게 종합적으로 잘 정리하였는가?		맺음말	10
20	전달력	○ 다양한 수사적 기법을 활용하였는가? (메타포 등 사용 여부, 어휘, 문장구사력) ○ 음성 전달은 적절하였는가?(빠르기, 크기, 고저, 강조, 어조)		전달력	20
20	토론 태도 탐위크	○ 자세와 태도는 적절하며 토론 예절을 잘 지켰는가? (말꼬리 잡기 여부, 토론 자세 등) ○ 협력과 역할분담이 잘 이루어졌는가?		토론 태도 탐위크	20
	감점	규정 제21조제2항 내지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5점범위이내)		감점	
총 점	찬성팀 심사의견		반대팀 심사의견		총 점
	○ ○		○ ○		
심사위원 성명 :			서명 :		

※ [별지2] 토론흐름표를 반드시 작성하고, 감점 시 심사의견란에 감점사유를 반드시 기재

[별지1]

## 제0회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 참가 신청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제0회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다음과 같이 참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귀중

<b>※접수번호</b>	20 -	참가신청서			
팀 명	[6자 이내(7자 이상은 약칭)로 기재하되, 지역명·대학명칭은 사용 불가]				
사 진 1 (이미지 파일)	성 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주 소				
	E-mail		핸드폰번호		
	소속대학	학교	학과	학년	
소재지(시·군·구까지만 기재) :					
사 진 2 (이미지 파일)	성 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주 소				
	E-mail		핸드폰번호		
	소속대학	학교	학과	학년	
소재지(시·군·구까지만 기재) :					

숙박여부	2인 숙박	1인만 숙박(이름 기재)	2인 비박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대회 운영 관련 통지 등 연락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이메일, 핸드폰번호, 소속대학 등
- 보유 및 이용기간 : 대회 참가 확인 등을 위한 기간(1년)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회 참가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동의     미동의     참가자1 서명 :  
 동의     미동의     참가자2 서명 :



[별지2]

## 토 론 흐 릑 표

구 분	찬 성	반 대
팀 명		
기조연설		
자유토론		
맺음말		
비 고		

[별지3]

제 호

# 상 장

○○○<sup>①</sup>

○○○<sup>②</sup>

위 사람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고  
○○<sup>③</sup>와 공동주관한 제○<sup>④</sup>회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  
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    년    월    일

○○○○○○○<sup>⑤</sup>

○○○<sup>⑥</sup>

○○○<sup>⑦</sup>

주 ①상장명 ②소속 및 성명 ③공동주관하는 기관명 ④제호 ⑤시상기관명  
⑥시상기관의 장의 직위 ⑦시상기관의 장 성명